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26 | December 2024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KC

Contents

법인세법

3

- [판례]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비상장 외국법인인 모법인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였다가 상장 이후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보전비용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9

- [예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이 분할사업 부문에 투자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예규]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에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1

- [예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12

- [판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 [심판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양육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정)
- [예규]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16

- [판례]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 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납세자승)

법인세법

[판례]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 시기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사안]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각 토지(제1~7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일부 인용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자(2009구합6605,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 서울특별시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0. 7. 1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은 2012. 2. 3.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변경하였고(2010누23790, “환송전 원심판결”),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상고하였는데(2012두6773), 대법원은 2014. 4. 24. 이를 일부 받아들여 제1토지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제2~7토지)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음(“선행 대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이 2015. 2. 3. 선행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뒤(2014누4285) 원고와 서울특별시가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2015. 2. 24. 그대로 확정되자 원고는 위 소송에 따른 수용보상금 증액분 전액을 201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피고는 제2~7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분(“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선행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선행 대법원판결의 선고일인 2014. 4. 24. 원고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 1,336,035,616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9. 7. 9.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음.

[판단]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2010. 7. 19.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201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코멘트]

- 1심은 이 사건 각 토지(제1~7토지)는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야 하므로, 토지별로 수용보상금의 조정차액의 확정 시기가 다른 경우 그 법인세 귀속시기도 달라지고,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조정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툼이 없게 되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법인세 귀속시기가 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제2~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의 선고일(2014. 4. 24.)에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판결의 상고기각 도과하여 확정된 날(2015. 2. 24.)의 다음날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원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67932 판결), 대상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함.
- 이 사건 각 토지별 수용보상금 증액금 귀속시기에 관한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원고	피고/ 1심, 원심	대법원
제2~7토지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2015. 2. 24.	2014. 4. 24.	2010. 7. 19.
제1토지 (대법원 파기환송 → 환송심 판결로 확정)	2015. 2. 24.	2015. 2. 24.	2010. 7. 19. (☞ 단, 명시적 판단 無)

[심판례] 비상장 외국법인인 모법인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였다가 상장 이후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보전비용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3전8913, 2024. 9. 26.

[사안]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미국 모법인인 A사(“쟁점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중 쟁점해외모법인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LLC Option”이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어 행사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쟁점보전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비상장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매수선택권을 해외모법인이 상장된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인 쟁점보전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판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은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권리 부여자의 요건을 판정하는 것이 세제상 핵심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조심 2021부7018, 2024. 6. 19. 합동회의 결정,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해외모법인은 전 세계 관계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및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등을 부여하는 임직원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장되기 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쟁점해외모법인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임직원에게 부여되었던 지분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지분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쟁점해외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관련 비용인 쟁점보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모법인이 상장될 때 종전 지분매수선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어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이 새롭게 부여(즉, 상장법인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 2 및 같은 법 제542조의 3에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분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규정된 법령 조항은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LLC Option”을 “지분매수선택권”으로 번역한 것이 적정한지를 알기 어려운 점, 「상법」 제340조의 2 내지 제340조의 5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 3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점, 쟁점해외모법인이 상장될 무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된 기업조직형태 변경계획서의 내용 중 “효력일 전에 발행된 지분매수선택권은 효력일 전에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확정적인지 여부, 행사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보유자의 어떠한 조치 없이 2009년 플랜의 조건에

[판단] 따라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전환 이후에도 지분매수선택권에 계속 적용되었던 보상 약정 및 2009년 플랜의 조항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공시내용으로 보아 종전에 부여되었던 지분매수선택권과 상장 이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모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지분매수선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신규로 부여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보전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의 일반 요건 즉, 인건비적 성격에 부합하므로 쟁점보전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 함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나 조세정책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아니나 손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등 순자산의 증감과는 별도로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비록 쟁점보전금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즉,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전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코멘트]

- 대법원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부여된 모회사 주식매수청구권행사비용을 보전한 보전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가 제19호에서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등’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도 이를 확인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담한 보전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로 볼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바 있음(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
- 기획재정부는 모회사(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매출액, 근속 기간 등의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보상으로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 또는 자회사 발행주식(비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 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가 실제로 보전한 금액은 인건비 등에 해당하여 손금산입된다고 해석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 7. 25.).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4광3777, 2024. 11. 6.

[사안] 청구법인은 2015. 10. 20. A사와 다음과 같은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음: (i) 쟁점사업부에 대한 양수도가액(“쟁점사업부의 양도가액”) 합의, (ii) A사는 쟁점사업부를 「상법」상 물적분할(“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 설립, (iii) 청구법인이 A사로부터 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되, 그 중 90%를 먼저 양수하고 나머지 10%를 최소 3년 또는 합병 시까지 보유하다가 양수. 위 양해각서에 따라 A사는 2016. 2. 1.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B사를 설립하였고, B사는 A사로부터 쟁점사업부의 자산(영업권 제외)을 시가(“쟁점사업부의 자산가액”)에 양도받았음. 청구법인은 2016. 4. 29. 와 2019. 7. 30.에 A사로부터 B사 발행주식의 90%와 10%을 각각 취득하였고, 2020. 1. 1 B사를 「상법」상 소멸법인으로 하여 흡수합병(“이 건 합병”)하였음. B사는 물적분할 시(2016. 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쟁점영업권”)을 A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권의 가액(쟁점사업부 양도가액 - 쟁점사업부 자산가액)으로 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2017~2019 사업연도분의 환급을 구하는 행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부에 대한 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지배하는 일반적인 물적분할과 달리 처음부터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양수도 및 합병이 목적인 비적격 물적분할이므로, 쟁점영업권(쟁점사업부의 양도가액 - 쟁점사업부의 자산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감가상각자산을 규정하면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고, 이 때 ‘분할’은 그 문언상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의 2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0, 2020. 6. 29. 및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568, 2020. 10. 29.,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A사는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사업부에 대한 양수도 양해각서 및 주식매매계약 등을 직접 교환·체결하고, B사 발행주식의 양수도 대가를 청구법인이 A사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B사가 물적분할 당시 쟁점영업권을 취득 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코멘트]

- 2010. 6. 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합병·분할시 과세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2010. 7. 1. 이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었음{법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 괄호규정 신설}.
- 기재부는 위 괄호규정의 개정이유에 관하여 “개정 합병·분할세제에서는 영업권 대신 합병매수차손·분할매수차손(합병·분할 시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으로 하여 손금산입” 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2009년 간추린 개정세법 中).
- 법인세법령에 따르면, ‘분할매수차손’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하며, 분할법인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분할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함 {법법 제46조의 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3항 및 법령 제82조의 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2항, 제3항}.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1항은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의 괄호에 ‘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4까지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예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이 분할사업 부문에 투자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2719, 2024. 9. 2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된 것) 개정 이전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코멘트]

- 2023. 2. 28. 조특령 개정 시,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8항 후단에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합병법인등”)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르면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
- 기재부는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바(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 6. 30.), 위 후단규정은 기재부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임.
-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은 2022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2022과세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 계산 시 분할 전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 결국, 대상예규는 위 후단규정을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예규]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에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0694, 2024. 10. 1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 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때,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코멘트]

- 조특령 제27조의 4(☞ 표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6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것으로 계산하는바, 월 중 퇴직자의 경우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계산 시(동조 제8항(☞ 청년등) 및 제9항(☞ 청년등 외))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의 급여를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한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 계산 시, 월 중 퇴직자의 경우 매월 말 상시근로자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조특령 제100조의 32 제11항; 조특령 제26조의 4 제3항), 국세청은 “조특법 제100조의 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말함)은 해당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서면-2023-법규법인-0390, 2023. 4. 3.).

[예규]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2024. 11. 28.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음.

[코멘트]

- 조특령 제100조의 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4항에 따르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인 기업소득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가산항목(제1호)을 더한 금액에서 차감항목(제2호)을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 차감항목의 하나인 법령상 의무적립금(다목; 조특칙 제45조의 9 제4항) 중 일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입이 가능함[금융회사의 대손준비금(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2항), 보험회사의 보충준비금(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 5 제2항)].
-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적립금이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환입되는 경우 해당 환입액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바,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은 해당 환입액을 기업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1안),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것인지(2안)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예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국조-0069, 2024. 7.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2 제5항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 2 제4항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7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 2 제5항에 따라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코멘트]

- 법인세법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4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93조 제10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금액(☞ **20%의 세율**)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5항은 “법 제98조의 2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자산의 소재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한편, 법인세법 제98조의 2 제5항은 “외국법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 **표제: 결정 및 경정**)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부가가치세법

[판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사안] 원고들은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서, '원고들이 체결한 장기손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함.

[판단]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 개정된 것) 제5조 제2호 단서("이 사건 조항") 가목은 소멸된 책임준비금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만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 가목에서 말하는 '만기·사망·해약 등'이란 책임준비금을 소멸시키는 사유 중 만기·사망·해약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만기·사망·해약'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여야 하나,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 개정 전 이 사건 조항의 내용상 '만기·사망·해약'은 공통적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그때까지 적립되어 있던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환급하여야 할 사유를 가리키는 반면,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위험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보험료적립금을 환급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만기·사망·해약'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당초 이 사건 조항에 있었던 '계약의 소멸'이라는 문구가 이 사건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 가목에서 삭제되었지만, 그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연금저축보험이나 보험료적립금의 중도 인출 등과 같이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적립금이 소멸하는 새로운 유형을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일 뿐, 보험료적립금의 소멸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지급준비금이 소멸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이 사건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 가목과 별도로 이 사건 조항 나목이 신설되어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일반손해보험에 한하여 당기 중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 가목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을 불문하고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것이므로, 특별히 일반손해보험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항 나목을 별도로 신설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또한 개정이유에 따라 이 사건 조항 나목이 신설된 취지는 '저축성보험의 지급 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 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상품 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의 지급 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판단] 데, 원고들의 주장은 이러한 이 사건 조항 나목의 신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조항 _계속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코멘트]

-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항은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는 제11호에서 '일반손해보험'을 '보험료 산출 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 이 사건 조항 나목이 규정한 보험과 같은 의미임)으로, 제12호에서 '장기손해보험'을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의 '만기·사망·해약'은 대표적인 보험계약의 소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보험계약이 소멸되면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만기·사망·해약'은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제되는 책임준비금 소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위 개정의 취지상, 위 시행령 조항의 '만기·사망·해약 등'에서의 '등'은 '만기·사망·해약'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 48153 판결), 대상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심판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양육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정)

조심 2024서1852, 2024. 10. 7.

[사안] 청구인(2004년생)의 아버지인 甲(“피상속인”)은 2022. 5. 21.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청구인의 어머니인 乙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가정법원은 2020.11. 26. 피상속인이 매월 양육비를 乙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2020드단3918)을 하였음.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22. 5. 21.) 이후 피상속인이 乙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2022. 11. 28.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보아 이를 상속채무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22. 5. 21.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함.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처분청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채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양육비의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의 조성에 그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 쟁점채무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관계로 전환된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어머니로부터 장래에 양육을 받는다고 전제할 때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 양육비로 사용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 전에 양육비를 일시지급하였다면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코멘트]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표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표제: 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서면-2018-상속증여-0064, 2018. 2. 6.).

[예규]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사전-2024-법규재산-0676, 2024. 10. 22.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집합건물의 각 호별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코멘트]

- 상속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5항은 2017. 12. 19. 개정 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가 인정범위를 확대함.
- 대상예규의 질의자는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집합건물 전체의 기준시가 합계는 10억원을 초과하나, 각 호별 기준시가는 10억 이하인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소득세법상 집합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제4조(고시대상)에서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에서 호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 호별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판례]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납세자승)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2659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는 A법인(“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13,600주(지분율 34%)를 보유한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甲은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14,400주(지분율 36%)를 보유한 주주임. 원고는 2018. 3. 1. 甲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3,600주 중 3,600주(“이 사건 주식”)를 증여(“이 사건 증여”)하였고, 甲은 2018. 6.경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907,945,200원(1주당 252,207원 × 3,600주)으로 산정하고, 그 중 같은 법에 의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을 공제한 307,945,200원(= 907,945,200원 -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로 49,009,580원을 신고·납부하였음. 이 사건 회사는 2018. 4.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3,600주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907,945,200원(1주당 가액 252,207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5. 8. 甲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907,945,200원에 매입(“이 사건 양도”)한 후 2018. 5. 25. 이를 소각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상 甲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2021. 1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20,400,930원을 부과·고지함(“이 사건 부과처분”).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배우자 甲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甲이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甲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모두 甲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됨으로써 甲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甲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증여에도 불구하고 甲이 이 사건 주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원고가 甲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지배·관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도 없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증여에 의해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옳음. 또한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甲에 대한 주식증여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 甲의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및 소각 → 양도대금으로 甲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의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甲의 가지급금 채무 변제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방식에 해당하되, 원고가 甲에게 자산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원고가 먼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甲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甲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판단]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그 중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계속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함.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甲에 대한 증여를 끼워 넣어 甲의 주식취득가액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조세 부담을 감소 시킴으로써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잠탈하였으며, 이는 주식양도대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에게는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甲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甲의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이 모두 증여 당시 가액으로 동일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인데, 甲의 주식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도가 주식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소득세법은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이월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2023. 1. 1. 이후 증여된 부분부터 적용하고 있는바,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억 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태도와도 맞지 않아 부당함.

[코멘트]

- 국세청은 위와 유사한 구조의 거래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배우자주식 증여거래(청구인들→배우자들) 및 이익소각(배우자들→법인)의 거래를 주식 이익소각(청구인들→법인) 및 현금증여(청구인들→배우자들)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심사-소득-2021-0064, 2022. 4. 6.), 조세심판원도 일관되게 배우자 주식증여 후 소각거래를 주식소각 후 현금증여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음(조심 2023중10663, 2024. 5. 9. 등).
- 2020. 12. 29. 소득세법 개정 시 ‘조세회피 방지 및 실질과세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양도일부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해당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제87조의 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단, 2023.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신설되었음.
☞ 그 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위 제87조의 13의 적용시기도 유예되었고, 국회가 2024. 12. 10.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위 제87조의 13도 삭제되었으나, 소득세법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였음(☞ 단, 2025.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주미현

S.Manager

T. 02.2112.4602

E. mihyunjoo@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박재현

Manage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주정연

Manage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